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우수매장 및 종사자 포
다.

행정안전부 –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와의
재난수습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마을기업협회, 중앙자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재난수습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협약기관·단체(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 사이에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운영원칙) 협약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법령 및 해당 기관·단체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협력 분야) ①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기관별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재난·안전정책 홍보를 실시하며, 구체적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재난정보, 정책홍보물, 교육·훈련 등 협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밖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한다.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효력 및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협약 연장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상호간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 협약체결 없이 1년씩 효력이 자동 갱신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존중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협약기관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협약기관이 문서로 합의하여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 협약기관은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8조 (운영) 본 협약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의 협의 하에 연락담당자를 두며, 본 협약 체결 후 서명권자가 교체될 경우 후임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13부를 작성,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7일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변형석

한국마을기업협회
회장 이상진

중앙자활센터
원장직무대리 서광국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종한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김혜정

icoop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회장 오미예
代 김아영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회장 김진아

한살림생협연합회
상임대표 곽금순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강은경

농협중앙회
회장 김병원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신종백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윤식